

Q1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?

- A1)** 아닙니다. ① 휴업 시에는 전체 근로시간을 20% 초과해서 줄이면 되고
② 휴직 시에는 1개월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.

Q2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?

- A2)** 휴업·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합니다.

* 단,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한 경우엔 휴업·휴직 실시 후 3일까지,
특별재난지역(대구·경산·청도·봉화) 소재 사업장의 경우 20일까지 사후신청 가능(소급 적용)

▶ 당초의 계획대로 휴업·휴직 실시가 어렵게 된 경우

⇒ “고용유지조치계획 변경신고서”를 제출하면 됩니다.(변경계획 실시 하루 전까지)

Q3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에 신규채용이 가능한가요?

- A3)**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,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
신규채용 허용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.

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이 가능한 사유**▣ (현행)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**

- (개선) 업무특수성 등 기준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
- › (업무 특수성)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으로 기준인력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
- › (법령기준 충족)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
- › (사업 확장) 신규 사업 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, 기준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
- › (기준인력 재배치)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영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
- › (직무의 차이) 가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여 기준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
- › (채용시기 변경)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(E-9)가 당초 계획 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
- › (파견근로자 직접 고용)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
- › (지역적 거리)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준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

▣ 적용기간 : '20. 4. 27(월) ~ 9. 30(수)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**▣ 신청방법 : 지원금 신청시, “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” 함께 제출**

※ 단, 사업주 단위로 10% 범위를 넘어갈 경우는 기준과 동일하게 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 결정

▶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, 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채널

(<https://youtu.be/OZQ02D3GuQU>)에 게시된 안내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.

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

고용유지지원금

2020. 7

사업개요

-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(직원수)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하지 않고 휴업·휴직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

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?

- 다음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(기준달 : 고용유지조치 시작한 달)

-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한 사업주
- 매출액·생산량이 ①직전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·생산량 또는 ②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·생산량 또는 ③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·생산량 대비 15% 이상 감소한 경우
-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, 직전 2분기의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
-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·감축 또는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(일부 생산라인 폐지 등)
-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

- 단,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할 경우,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도록 지원요건 완화

- > 인정예시 : 예약취소증, 휴업권고서, 원자재 수급불가에 대한 증명, 확진자의 방문 등
- > 인정기간 : '20. 1. 29 ~ 「국가 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시까지

지원대상

-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1인 이상 기업(모든 업종)

지원조건

- 휴업수당 신청요건 : 전체 근로시간의 20%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
- 휴직수당 신청요건 : 1개월 이상 휴직 실시

지원내용

- 지원수준 :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·휴직수당의 일부
 - 우선지원대상기업 : 2~3월 임금에 대해서는 75%, 4~9월 임금에 대해서는 90%
 - 대기업 : 2~9월 임금에 대해서는 67%
- * 올해 10월부터 다시 기존 지원수준 (우선지원대상기업 67%, 대기업 50%)

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?

1.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

- > 500명 이하 : 제조업
- > 300명 이하 : 광업·건설업, 운수업, 출판영상업, 사회복지서비스업, 과학기술서비스업, 보건업
- > 200명 이하 : 도소매업, 숙박음식업, 금융보험업, 예술스포츠업
- > 100명 이하 : 그 밖의 업종
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은 1번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

- 지원한도 : 상한액 1일 6만6천원(월198만원), 최장 연180일

지원절차



신청방법

-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gi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

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→ ② 상단의 “기업서비스” → ③ 고용안정장려금 →

④ “고용유지지원금”에서 신청가능

* 계획 신고후 계획 변경시 : 변경 1일전에 온라인(www.egi.go.kr)으로 변경신고

지원금액 예시

우선지원
대상기업

사례	구분	2~3월(75% 지원)	4~9월(90% 지원)
월급 200만원 근로자	휴업수당(월급×70%) 고용유지지원금	140만원 105만원	140만원 126만원
월급 378만원 근로자	휴업수당(월급×70%) 고용유지지원금	265만원 198만원(상한액)	265만원 198만원(상한액)

* 상한액(월198만원)에 의해, 월급여 315만원 이상 근로자는 모두 지원금 198만원으로 동일하며, 월급여 378만원 이상 근로자는 지원수준 확대에 따른 지원금 변동 없음